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9 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등에게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여 생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에게도 적용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 번호의 정비와 신청자격, 제출서류, 계약기간, 설치계약의 해지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과 적용대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매점의 경우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면적으로 하는 등 적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 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함.(안 제5조)
- 다. 신청은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 재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 하는 등 신청자 격과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6조)
- 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계약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8조)
- 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계약 위반시 등에는 설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버스판매소 11개소만 장애인들이 매점을 하고 있듯이 장애인이나 저 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그 기능이 상 실되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 음. 본 제도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 와 협의해 나가겠음. (이상 사회복지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우선하여 계약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 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다. 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3. "시장등"이란 시장, 소속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한정한다.
 -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공고 등) 시장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 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 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 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 원을 야기할 경우
 -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 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제461호
의	결	2009. 9. 8.
년 _월	일일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등에게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여 생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에게도 적용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 번호의 정비와 신청자격, 제출서류, 계약기간, 설치계약의 해지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과 적용대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매점의 경우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면적으로 하는 등 적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 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신청은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 재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 하는 등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6조)
- 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계약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8조)
- 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계약 위반시 등에는 설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 첨 부: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우선하여 계약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 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다. 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3. "시장등"이란 시장, 소속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 ②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한정한다.
 -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 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 다
- 제5조(사전공고 등) 시장등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 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 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 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같은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 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 원을 야기할 경우
-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u>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7</u>조제2항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 가 유 공 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		로「국민기초생활	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중 「국민기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 조의 대상자 중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2	장애인 등급이 3, 4 급으로「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 만 노인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 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 조의 대상자 중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이외 의 사람
3	장애인 등급이 5, 6 급으로「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제 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주 소							
청	대상시설명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인	영 업 장 소							
	설치대수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이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현행조례)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998. 01. 10 조례 제156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전공고)

- ①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반회보 등에 게재, 사전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설치희망자를 파악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 정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는 이를 직접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 도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②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6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관계 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제42조 (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 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O 노인복지법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O 한부모가족지워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3. 전몰군경(전몰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군 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를 포함한다]
 -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 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 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 로 판정된 자
 - 7. 무공수훈자(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은 자
 - 8. 보국수훈자(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 9의2. 6·25전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한다.
 - 10.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11.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 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12.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건국포장)을 받은 자
 -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

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 로 의결된 자
-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 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제15호와 제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 으로 인정된 자
- 5. 제1항제13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6. 제1항제13호나목 및 제14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③ 삭제 <2002.1.26>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28>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녀
 - 3. 부모
 -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 ③ 삭제 <1994.12.31>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⑦ 삭제 <1994.12.31>
 - ⑧ 삭제 <2000.12.30>
- 제68조의2 (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현행 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 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사전공고) ①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는 이를 시보, 반회보 등에 게재, 사전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설치희망자를 파악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 (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 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는 이를 직접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②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6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